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 및 겸직제도 강화
- (일본) 일본 지자체의 이주지원정책

지역발전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City of San Francisco) “피트 스톱(Pit Stop)”
- 사회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한 24시간 원스톱 공공위생시설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 및 겸직제도 강화

지방의회 의정비의 적정수준 추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 필요

-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지방의원들의 급여체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안 필요
 - 지방의원의 경우 원칙적 겸직 허용을 하고 있으나, 겸직금지 범위에 대한 논란 존재
 - ※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의정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등 급여체계 개선 필요
 - 지방의원 겸직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

일본의 지방의회 의정비

- 일본의 지방의원은 겸직과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근무 일수와는 관계 없이 정액의 보수를 받는 「유급직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 제92조는 중의원, 참의원,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원,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상근 직원과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단시간 근무직원에 대해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2조의2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의원은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청부(請負)자 및 그 지배인, 또는 주인으로서 동일 행위를 하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 집행역 또는 감사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지배인 및 정산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원의 겸업 또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03조 제1항은 ‘보통지방공공단체는 그 의회 의원에 대해 의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이 지방의회위원의 보수지급 근거가 됨
 - 지방의회위원은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부, 즉 생활급이 아닌 근무량의 반대급부, 임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함

의정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지방의회 의정비 및 겸직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정비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지방의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또는 심의회 위원 대비 의정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직무상 대면하는 공무원 직급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심의회 위원은 계장급 보수 수준이, 의회 의원은 과장급 또는 국장급 보수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또는 심의회 위원 대비 의정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적절한 광역의원의 의정비 수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심의회 위원은 계장급 보수 수준이, 의회 의원은 과장급과 국장급 보수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초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기초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심의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의회 의원 가운데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광역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 비 겸직 의회의원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겸직 의회의원의 경우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방의원의 겸직을 전제로 한 기초 지방의원의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 가운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반면, 심의회 위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방의원의 겸직을 전제로 한 광역 지방의원의 적정한 의정비 수준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반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정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의정비 가운데 지방의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내역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활동 비용 및 교통비로 조사된바, 향후 의정비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부문에 대한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에 충당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이하로 충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정비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정활동비 현실화

-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수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의정활동비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의정활동비 구성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의정활동비 지출의 투명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해 각 비목별 증빙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임

정책활동지원비 신설

-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정책개발과 조례제개정을 위한 정책활동 지원비를 신설하여 의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공모방식으로 신청하게 하여 이를 외부 심사 위원들로 구성된 “(가칭) 정책활동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게 하고 지출내역은 회계 증빙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분담

-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보수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겸직금지제도의 개선

- 원칙적 겸직금지제도의 도입 검토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일반 공직자에 비해 영리행위와 겸직이 자유로운 편인데 고위공무원 수준으로의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량과 업무일수를 고려했을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겸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지방의원이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본연의 활동인 입법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함
- 설사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비영리단체의 홍보대사와 같은 업무에 한정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는 겸직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겸직신고 및 제재 강화
 -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반부패 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취임 외에 모든 영리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의 영리행위도 사전에 의장 또는 상급기관에 서면신고하고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겸직내용의 공개 및 위반 시의 제재 수단 등도 미흡한 편이므로 겸직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영리행위가 위법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엄격한 징계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라영재, 2010)
 - 이를 위해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고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무 규정 마련, 지원 경비의 환수, 지방의정 성과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